



관세청
www.custom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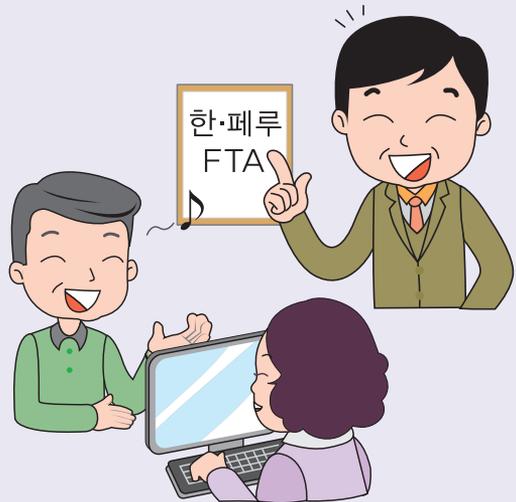
<http://www.customs.go.kr>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Government Complex Daejeon 920 Dunsan-dong Seo-gu Daejeon 302-
701, Korea



한·페루 FTA

미리 알아보는 한·페루 FTA 활용하기



관세청
www.customs.go.kr



미리 알아보는 한·페루 FTA 활용하기

CONTENTS

- I. 한 · 페루 FTA 발효로 양국 교역상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시다. ---- 1
- II. 한 · 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
- 한 · 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원산지증명서 양식이나 유효기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 III. 한 · 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다. ----- 10
- 한 · 페루 FTA 특혜관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페루에서 수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 IV. 한 · 페루 FTA 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 13
- 양국간 교역되는 상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으로 무엇이 규정되어 있나요?
 - 미소기준(De Minimis)이 규정되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외에 직접운송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한 · 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도 포함되나요?
- V. 한 · 페루 FTA 협정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알아보시다. ----- 18
- 특혜 관세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원산지검증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VI. 한 · 페루 FTA 협정 내용 중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시다. ----- 19
-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해 특별간금관세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페루로부터 수입되는 중고품에 대해서도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페루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VII. 알아두면 좋은 자료 ----- 23
- FTA 관련 문의처
 - FTA 협정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I. 한·페루 FTA 발효로 양국 교역상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시다.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해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수입액을 기준으로 양측 모두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고, 품목수를 기준으로 우리는 97.4%, 페루는 98.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페루 FTA 전체상품 양허수준 비교 〉

양허단계	우리 양허				페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10,044	84.5%	915,668	94.2%	5,001	67.9%	464,927	74.2%
3년	223	1.9%	407	0.0%	58	0.8%	312	0.0%
4-5년	609	5.1%	18,655	1.9%	936	12.7%	90,540	14.4%
(5년내 소계)	10,876	91.5%	934,730	96.2%	5,995	81.3%	555,780	88.6%
계절관세	2	0.0%	0	0.0%	-	-	-	-
현행관세/양허제외	107	0.9%	1	0.0%	5	0.1%	0	0.0%
총 합계	11,881	100.0%	971,887	100.0%	7,370	100.0%	626,948	100.0%

* 품목수는 HS 2010 기준, 금액은 협상기준연도인 2007-2008 평균 기준

** ASG 적용품목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 한·페루 상품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한국 양허		양허 유형	페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나프타, 고철, 원유, 석탄, 윤활유, 금, 은,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시계, 건전지, 가죽제품(벨트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사프란)	10,044	즉시 철폐	5,001	대형 승용차(3개 세번), TV(컬라, 흑백), VCR, 전기 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 자동차 부품, 카스터레오,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라이터, 손목시계, 오락용구, 기타 합성섬유, 녹차, 배, 사탕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우(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223	3년 철폐	58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	-	4년 철폐	2	-
연고,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 대용물, 어류의 유지	609	5년 철폐	934	중형 승용차(3개 세번),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품, 종이제품, 설탕(정당),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옥수수(종자용) 소모사, 봉장어(냉동필레트)	170	7년 철폐	40	일부 철강제품
-	-	8년 철폐	11	장신구, 황산
아연과, 일부 연고,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고등어(냉동), 오징어(냉동, 지숙, 조미, 건조), (ASG) 닭고기(냉장), 오리고기(냉동), 체다 치즈, 무당연유, 녹두·팥	524	10년 철폐	1,240	기타 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훈방면사, 폴리에스터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연축전지,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난황	2	12년 철폐	24	쇠고기(냉동 절단), 설탕(원당)
발효주정	1	15년 철폐	20	버터, 발효유, 빙과류
돼지고기(삼겹살), 버터, 녹차, 설탕(정당), 참기름, 필터담배	199	16년 철폐	-	-
-	-	17년 철폐	35	닭고기, 치즈
포도, 오렌지	2	계절 관세	-	-
쇠고기(신선, 냉장, 냉동), 고추, 마늘, 양파, 감귤(온주밀감), 보리, 사과, 배, 탈·전지분유, 치즈, 인삼류, 대두, 밤, 대추,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렌지주스	91	현행 관세 유지	-	-
쌀	16	양허 제외	5	쌀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에 앞서 페루 시장을 선점하고, 한·칠레 FTA에 이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 2010년 기준으로 한·페루의 교역현황은 對페루 수출액이 9.4억불, 수입액이 10.4억불입니다.

〈 한·페루 연도별 무역 현황 〉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금 액	2.4	2.8	3.6	4.7	7.2	6.4	9.4
	증가율	19.9	15.2	27.1	29.9	54.5	-10.9	47.2
수 입	금 액	2.8	2.5	6.8	10.4	9.0	9.2	10.4
	증가율	45.6	-11.9	170.9	53.9	-13.1	1.7	13.0
무역수지		-0.4	0.3	-3.2	-5.7	-1.8	-2.8	-1.0

한·페루간 교역구조, 산업경쟁력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 한국은 對페루 수입액 중 92%가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추가 개방부담은 8%에 국한되는 반면, 페루는 승용차, 가전제품을 포함한 對한국 수입액의 2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추가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감한 품목인 농·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 페루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 반면, 우리는 쌀을 포함한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유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Ⅱ. 한·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한·페루 FTA의 원산지 증명방식은 협정 발효 이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서는 “자율증명”을 허용합니다.
- (기관증명) 수출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한국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의해 협정상 정해놓은 서식(부속서 4가-1)으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율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 가격이 미화 2,000불 이하 수출자인 경우에는 부속서 4가-2의 문안을 송장 등에 기재한 신고서(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페루 FTA 기간별 원산지 증명서식 〉

구 분	발효 이후 5년간 (2011~2015)	발효 6년 이후 (2016~)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부록 4가-1)	-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 (부록 4가-2)	원산지 증명서 (부속서 4나)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무엇이고,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한·페루 FTA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다음과 같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원산지 증명서에 언급된 물품이 직접 운송되지 않고 비당사국 관세당국 통제에 따라 일시 수용·보관된 경우 1년 동안 효력 연장이 가능하고 수입자는 유효기간 연장 입증을 위해서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문서(보관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를 제출·확인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수입당사국 관세당국 통제에 따라 일시 수용·보관시 해당 관세당국이 승인한 기간 동안에는 유효기간이 정지됩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우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WP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 공정 또는 그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i) 해당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함께 기재	PSR(BD ---%) PSR(BU ---%)
ii)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 또는 비원산지 재료 사용 등	PSR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물품	OP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서식〉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No. :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Peru FTA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HS code(Six digit code)	9. Origin criterion	10.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³ , etc.)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div style="text-align: center;">(Country)</div>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div style="text-align: center;">(Importing country)</div>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 - Peru FTA.</i>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증명서 번호: 수입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한 명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생산자들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도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SAME(동일)”이라고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 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 날짜,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합니다.
5. 제5란에는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페루와의 협정문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 이란에 명기될 수 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을 적으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포장의 수량, 종류 및 각 상품의 정식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 “IN BULK(포장되지 않음)”이라고 적습니다. 상품의 품명 끝에는 “****”(별 3개) 또는 “\”(사선)을 더합니다.
8. 제7란에 명시된 각 상품에 대해,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WP
다) 별표 6 중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 공정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1)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물품	OP

- (1) 해당 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함께 적습니다.
10.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이란에 적습니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11.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이란에 적습니다. 상품의 송장을 비당사국 운영인이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이란에 적습니다.
12. 이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13. 이란은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의 권한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소인을 찍습니다.

〈한-페루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

ORIGIN DECLARATION¹⁾

The origin declaration, the text of which is given below, must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footnotes. However, the footnotes do not have to be reproduced.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ation No.....²⁾)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³⁾ preferential origi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a.....⁴⁾"

.....⁵⁾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o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Remarks)⁶⁾

-
- 1) The number of items covered by this declaration should not exceed 20.
 - 2) When the origin declaration is completed by an approved exporter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of Annex 4A, the authorization number of the approved exporter must be entered in this space. When the origin declaration is not completed by an approved exporter, the words in brackets shall be omitted and the space shall be left blank.
 - 3) Origin of goods to be indicated (Korea, Peru).
 - 4) Origin criteria of goods to be indicated as in Box 9 of Appendix 4A-1.
 - 5) These indications may be omitted if the information is contained on the document itself.
 - 6) Special indication should be made, for instance, in the case of goods subject to Article 3.15(Principle of Territoriality): "Article 3.15 has been applied."

Ⅲ. 한·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페루 FTA 특혜관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수입업체가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법령상 세관이 요구할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합니다.(FTA관세특례법)



페루에서 수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 관세특혜를 위한 필수서류가 원산지증명서인 것은 사실이나,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면제됩니다.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 한·페루 FTA 뿐만 아니라 각각의 FTA는 이러한 면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기준 〉

FTA	기 준
한 ·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이 미화 1,000달러 미만인 상품의 상업적 및 비상업적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 ·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미만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 · 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 유로 미만 -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유로 미만
한 ·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미만 -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미만
한 ·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간에 송부된 소포 또는 여행자 개인 수화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 ·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미만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
한 ·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 유로 미만 -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유로 미만
한-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수입당사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IV. 한·페루 FTA 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양국간 교역되는 상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 무엇이 규정되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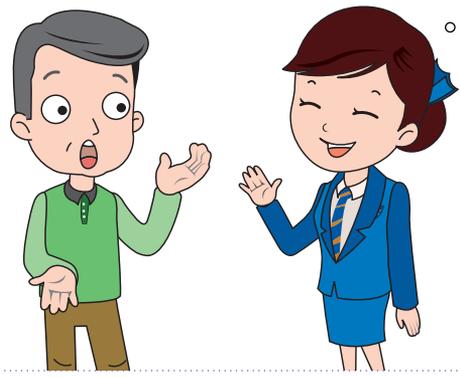


-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주요공정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완전생산기준에 대해
 - ① 양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상품
 - ② 양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 또는 양식을 통해 획득한 상품
 - ③ 양국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 ④ 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에서 당사국 기국 선박의 어로행위 등을 통해 획득한 상품과 그 상품으로만 당사국 기국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 ⑤ 양국 토양, 바다,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 및 자연자원
 - ⑥ 당사국이 개발할 권한 있는 상품에 대해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해저하부로부터 채워진 상품
 - ⑦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생산 공정 또는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발생한 원재료 회수용 폐기물 및 부스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기준 판단을 위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Regional Value Content)의 계산은 공제법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하는 방법) 또는 집적법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하는 방법)을 모두 도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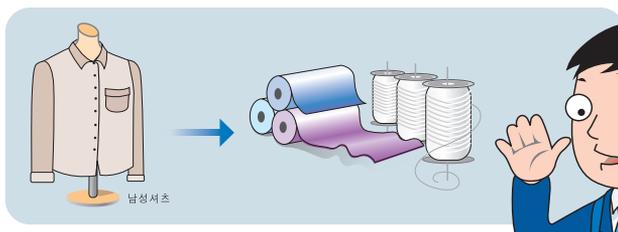
미소기준(De Minimis)이 규정되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한·페루 FTA에서도 미소기준이 규정되어 있나요?

네, 제품의 가치 또는 총중량으로 미소기준을 규정하여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미소기준”을 두고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의 가치가 제품 가치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 단, 신선농산물(HS 1~14류)에 대해서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섬유 및 의류(HS 50~63류)에 대해서는 사용된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소기준을 활용하면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외에 직접운송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한·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양당사국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 그러나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적 보관 여부와 관계 없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하고,
- ②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 한국과 페루간 직접운송되지 않고, 비당사국 통제하에 경유과정 중 일시 수용·보관될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이란 유효기간' 이 1년동안 효력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달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즉, 완성차를 제외한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 원자재 수입 및 글로벌소싱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 기준 〉

품 목	HS류	원산지 기준
자동차	87	완성차 :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자동차 부품 : CT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전기/전자	85	주요 품목 CTH/CTS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기타 전지, 녹음기, 램프, 전선 등은 CTH/CTSH 또는 RVC 50% 이상
기계	84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CTSH 또는 RVC 50% 이상 저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계산기, 전자수첩, 파쇄기 등 : CTSH
섬유 및 의류	50-60 61-63	견, 면, 모, 마 등의 사(yarn) 및 직물(fabric) : CTH 인조 섬유 : 대부분 CC 또는 CTH 의류 : CC(단, 역내에서 제단, 봉제 등 가공공정기준 수행) * 기본적으로 원사기준 적용, 단 포켓, 지퍼 등 약세사리 제외 *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스테이플 직물에 대해서는 염색·날염의 주요공정기준도 선택 적용 (단, RVC 50% 이상)
신발	64	기본적으로 CTH, 일부 품목에서는 RVC 50% 이상도 선택 적용 단, 역외산 갑피(upper)를 재료로 사용한 세번변경은 불인정

한·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도 포함되나요?



- 해당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를 불인정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정문 부속서 3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Hs 6단위 기준 100개 품목(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 등)은 한국으로부터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로 수출되고 이후 한국으로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 그 곳에서 수행된 공정 및 처리는 한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 가치는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V. 한·페루 FTA 협정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혜 관세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원산지 검증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원산지 검증(verification) 방식에 있어,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 직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verification visit) 등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 간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수출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등의 직접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세관당국의 권한있는 공무원이 동행하여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수출국 관세당국의 수입국 검증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서면진술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VI. 한·페루 FTA 협정 내용 중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시다.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다치즈, 천연물, 콩류, 맨더린)에 대해서는 협정에 규정된 기준 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 조치가 가능합니다.
-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시행되지만,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즉, 동일 계약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운송 중에 있지 않은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대상입니다.
-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시행일부터 한·페루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당해 사실을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등에 게시하게 됩니다.

페루로부터 수입되는 중고품에 대해서도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중고품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중고품을 규정하여 해당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서류 제출대상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

품목번호	품 명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8421.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9	기타
8421.19.1000	내과용 · 외과용 및 이화학용의 것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스의 진단기기 ·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4.0000	신티그래픽스 진단기기
9018.90	기타의 기기
9018.90.1000	임신진단기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 · 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 · 고압발생기 · 조절반 · 스크린 · 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 ·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9022.13.0000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페루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한·페루 FTA 협정문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규정하듯이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페루간 수입되는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우리나라에서 페루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②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페루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그러나 수리 또는 가공을 초과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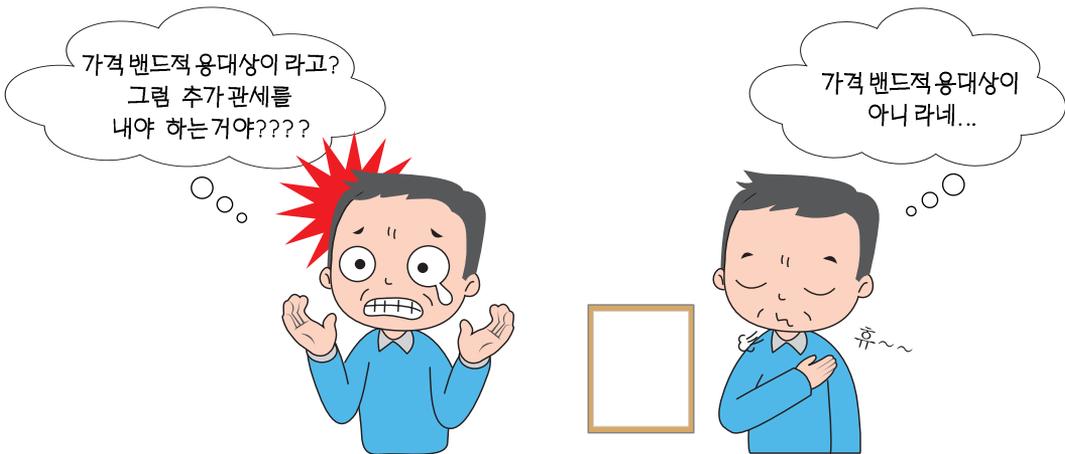
〈수리 또는 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한-페루 FTA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밴드 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페루는 자국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 중 협정 부속서 2라에 기재된 상품(Hs 10단위기준: 47개 품목, 가당연유, 버터, 가공치즈,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사탕무당 등)에 대해서 가격밴드 제도(제2.16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격밴드 제도(Price Band System)라 함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물품에 대해 수입가격 밴드를 설정하고 수입가격이 동 가격밴드 이하로 낮아질 경우 기본관세 이외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상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VII. 알아두면 좋은 자료

FTA 관련 문의처

- 협상 관련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 02) 2100-8110
- 법령 관련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 ☎ 02) 2150-9355
- 통관 관련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042) 481-3222, 3283
관세FTA고객지원센터 ☎ 1577-8577
(관세청 FTA 메일: fta@customs.go.kr)

FTA 협정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구 분	주 소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www.origin.or.kr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fta/main.jsp
무역협회	http://fta.kita.go.kr
FTA 활용 종합지원포탈	http://www.fta-usa.kr
한국관세사회	http://fta.kcba.or.kr
FTA 종합지원포탈	http://fta.korea.kr

한·페루 FTA

미리 알아보는 한·페루 FTA 활용하기

발행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발행일 : 2011년 7월

스텝출판인쇄공사

042. 624. 0924

이 책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042-481-3222)